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65
------------	----

제출년월일 : 2003. 8.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대통령령 제15903호, 1998. 10. 1)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평창군 조례 제1558호, 1998. 11. 12)를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안(대통령령 제18003호, 2003. 6. 23)
"별첨"

평창군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평창군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안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공포일로부터 시행일전까지 존속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업무는 동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기 위산 잔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